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 라. 상정일자: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1.6.15.)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 제안이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동이나 보건소로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
  -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에 관한 사무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나.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등 13개 사무
- 다. 사무명,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등 9개 사무
- 라.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사무의 삭제
  -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 삭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4조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 3) 「지방일괄이양법」 제21조, 제43조
  - 「모자보건법」 제12조, 「의료기기법」 제16조제33조제36조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생략

※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 가. 개정 취지

- 「지방일괄이양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 및 누락 사무를 신설하고, 기존 위임사무의 사무명과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 안 제5조(위임사무) ‘별표’ 중 위임사무 신설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

연번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7. 피임약제 사무	모자보건법 제12조제2항	보건소
2	27.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동

#### ○ 안 제5조(위임사무) ‘별표’ 중 누락 사무 신설

-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수임기관: 보건소)

연번	사 무 명	근거법령	비 고
1	4.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조례←규칙
2	5. 소독업에 관한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조례←규칙
3	6. 결핵 예방에 관한 사무	「결핵예방법」 제5조 등	
4	8.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모자보건법」 제12조제2항	
5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6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약사법」 제44조 등	조례←규칙
7	20.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수리	「의료법」 제35조제1항	
8	2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법」 제61조 등	
9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조례←규칙
10	23.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법」 제16조 등	조례←규칙
11	24.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기능 사전승인	「의료법」 제27조 3항	
12	25.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3	26. 응급장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례←규칙

## ○ 사무명,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연번	주요 개정내용	수임기관
1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가.'6급이하'에서 무보직 6급이하로 변경, '기능직'삭제 등	구의회 보건소
2	10.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약사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보건소
3	11.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사무명 개정: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로 변경 →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이양사무인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추가,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4	12.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 「의료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5	13.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 사무명 개정: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6	14.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사무명 개정: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7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8	16. 치과 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9	18.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	

## ○ 안 제5조(위임사무) '별표' 중 사무의 삭제

-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증 재사용 규정 삭제에 따라,  
20.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 삭제

##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1. 1. 1.부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 1))」이 시행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기존 13개 위임사무를 27개 사무로 정비하였음. (붙임 참고)
-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의 위임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 1) \* 「지방일괄이양법」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46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함

## 참고

## 위임사무 개정 사항

현 재	개 정 안	비 고
1. 삭제(1999. 8.16) 2. 삭제(1999. 8.16) 3. 삭제(1999. 8.16) 4.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5.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6. 종량제 실시제대상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3. 종량제 실시제대상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7. 삭제(1999. 8.16) 8. 삭제(1999. 8.16) 9. 삭제(1999. 8.16)	4.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 설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7. 피임약제 사무	
	8.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10.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	
10.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0.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1. 삭제(2003.12.30) 12. 삭제(2001. 9.25) 13. 삭제(2003.12.30) 1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1. 의료기기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명칭변경
15.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12.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16.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13. 절골, 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명칭변경
17.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명칭변경
18.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19.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	16.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	
20.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		삭 제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18.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 설
	20.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21.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23.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24. 의료기관영구적환자유행위등금행위중일부능사선승인	
	25.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26. 응급장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27.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 지방일괄이양법

제21조(「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모자보건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



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